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또는 불법공매도로 인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7조의2(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제180조·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 및 자료를 신문·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조사실적·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 당초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계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를 비공개하였으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3년 3월부터는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²⁾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³⁾를 공개하되,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⁴⁾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 등을 비공개하고 있음.⁵⁾

□ 그런데, 법원에서 위법이 확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대상자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또는 불법공매도로 인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29),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29의2), 공매도 규제 위반(「자본시장법」 §429의3)
3)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음.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174),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176),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178)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2022. 12.

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최근에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제재를 받은 형사처벌 대상자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재처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 위법이 확정된 후에는 금융거래정보의 공개가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1]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미공개정보이용(§174)	23	15	16	13	13	80
시세조종(§176)	12	15	12	8	8	55
부정거래(§178)	16	23	12	19	24	94
불법 공매도(§180, §180의4)	2	1	4	9	22	38
합 계	53	54	44	49	67	267

주1: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건의 유형별 통계(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포함)

주2: 동일 사건에 복수의 불공정거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순으로 통계산정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기간·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공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정보의 송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기관인 법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두는 것은 권력 분립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⁶⁾ 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등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며(제42조⁷⁾), 법무부장관은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집행주체인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제47조⁸⁾)하는 등 그 절차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6)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45.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둘째, 개정안은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금융거래 정보에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에서는 이 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위반에 따라 위법이 확정된 경우를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